

의안번호	2209657
의 퇴 인	신장식 의원
회 답 일	2025. 6. 30.
추 계 번호	25B2152

먹거리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국가 먹거리 기본 계획 수립, 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작성·보급, 국가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9억 2,600만원(연평균 7억 8,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안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3조), 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및 평가(안 제17조)	160	—	—	—	—	160	32
국가먹거리위원회(안 제18조), 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9 조)	53	53	53	53	53	266	53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27조)	700	700	700	700	700	3,500	700
합계	913	753	753	753	753	3,926	785

주: 1. 유사 연구용역 사례,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과거 유사 사업 규모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실시 및 위원회 운영 방식·규모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
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과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공적 먹거리 보장이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제4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과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며 국가의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6항)	
2	안 제8조(적정 먹거리 보장권)	모든 국민은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이하 “먹거리 보장권”이라 함)를 가짐	의무규정
3	안 제9조(먹거리 보장의 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적 먹거리의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적 먹거리 공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및 공급가액 등 공적 먹거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0조(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농어업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적정 먹거리 보장 수준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의 증가, 전 세계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 및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량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농어업 기반을 강화하고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여야 함(제3항)	
5	안 제12조(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종합전략”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종합전략에는 식량주권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목표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량자급율 목표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전략과 과제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과제 이행과 조직 및 기구설치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안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에 따라 5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식량주권의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3. 먹거리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4.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6.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항)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대학에 설치된 연구기관 등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5항)	
8	안 제17조(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및 평가)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이하 “성과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8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함(제2항)	
9	안 제18조(국가먹거리위원회)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10	안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제8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20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대통령은 위원회에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을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합동 정책회의를 주관하며, 이 법에 따른 감독과 보고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및 기타의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는 직제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사무국 및 해당 직제는 대통령 소속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21조(담당기관)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먹거리정책책임관을 둠(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13	안 제22조(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14	안 제23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종합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항)	
15	안 제24조(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이하 “시·도먹거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무총리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25조(국민의견의 수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전략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설 숙의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설숙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6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8	안 제27조(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제2항)	
19	안 제28조(국내외 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0	안 제31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함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제3호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의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설치운영, 적정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등 제정안에서 정한 조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조문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8조(적정 먹거리 보장권)	×	• 제3호 – 제정안은 모든 국민에 대한 먹거리 보장권을 부여하는 선언적 조문으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9조(먹거리 보장 수준)	×	• 제3호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 공적 먹거리의 공급기준 및 공급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10조(식량 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	• 제3호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적정 먹거리 보장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량 확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12조(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 10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안 제13조에 따른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시 병행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13조(기본 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7	안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	• 미대상 –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제1항)
		×	• 제3호 – 현 시점에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비용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4항부터 제6항까지)
8	안 제17조(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및 평가)	○	안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먹거리 보장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작성 및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제1항)
9	안 제18조(국가 먹거리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10	안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유사사례 참고 –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제7항)
		×	• 제3호 – 현 시점에서 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원,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8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20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	• 제3호 - 현 시점에서 합동 정책회의 주관 등 대통령 소속 별도 직제로 구성하는 사무국의 유형, 정원,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21조(담당기관)	×	• 제3호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두는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채용규모, 직급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1항)
13	안 제22조(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미대상 - 현행 시·도별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임 - 예: 서울시먹거리위원회('17,11.) 경기도먹거리위원회('19.1.) 등
14	안 제23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 제3호 - 현 시점에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구 단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지원 중('22~) ※ [참고자료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개요 및 [참고자료 3]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개요 참고
15	안 제24조(시·도 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제3호 - 현 시점에서 시·도먹거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모 및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구 단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비용 지원 중('22~) ※ [참고자료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개요 및 [참고자료 3]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개요 참고
16	안 제25조(국민의견의 수렴 등)	×	• 제3호 - 현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는 상설 숙의기구의 유형과 구체적 운영방안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7	안 제26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	• 제3호 - 현 시점에서는 대국민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비용,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 구축·운영,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 비용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8	안 제27조(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	×	- 제3호 - 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론, 표본, 문항 등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1항)
		○	- 유사사례 참고(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농업 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 세부사업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기반 조성' 내역사업 중 교육·홍보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2024년부터 예산이 삭감됨 - 제정안 시행에 따라 예산 삭감 직전 3년 평균 예산 수준으로 사업이 다시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재정소요를 산출함
19	안 제28조(국내외 협력 등)	×	- 제3호 -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국내외 먹거리 활동에 지원하게 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9	안 제31조(포상)	×	- 제3호 - 먹거리 기본권 보장 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안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3조), 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및 평가(안 제17조)

-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1억 6,000만원으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¹⁾ 수립 시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6,000만원 편성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기본계획보다 작은 규모의 시·군·구 지역먹거리계획²⁾ 수립 시 1개 지방자치단체당 1억원이 소요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인 5,000만원을 지원해 왔음(2023년까지 지원 후 종료)

※ [참고자료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개요

[참고자료 2]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현황 참고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내 먹거리계획 수립 관련 유사사례

(단위: 백만원)

유사사례	수립비용	비고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60	• 5년 단위 법정계획
지역먹거리계획 (시·군·구 단위)	100	• 시·군·구 단위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 국비 50% 지원 － 2023년 기준, 20개 지자체에 총 10억원 지원 － 2024년부터 사업예산 미편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때, 10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제12조)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수준에 관한 성과지표 작성·보급(안 제17조)에 관한 사항은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무총리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보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억 6,000만원(연평균 3,2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9. (생략)
 - ② ~ ⑤ (생략)
 -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성과지표
작성·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성과지표 작 성·보급	160	-	-	-	-	160	32

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등 수행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국가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 국가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함³⁾
 - 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35명(70%)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⁴⁾
 -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1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3개 등 총 4개가 구성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70%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사항⁵⁾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분한 것임

3) 제정안은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그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 제18조(국가먹거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성과지표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먹거리 관련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표 4] 국가먹거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주요 기능 (안 제18조제2항)	총 인원	민간위원 (총 인원의 2/3 이상)	
국가먹거리위원회 (분위원회 1개)		아래 1~10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50	35	
분과 위원회 (4개)	실무위원회 (1개)		1.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의 규정 충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5	11
	분야별 전문위원회 (3개)	평가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성과지표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11
		교육·홍보	7.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7
		대외협력	8. 먹거리 관련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7

주: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전체의 70%로 가정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⁶⁾
- 회의개최 횟수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⁷⁾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⁸⁾ 회의개최 현

9. 다른 법률의 규정 충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8)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황을 참고하여 본위원회는 연 3회, 분과위원회(4개)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유사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22~2024년

(단위: 회)

		2022	2023	2024	합계	평균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2	2	1	5	1.7
식품산업진흥 심의회	분위원회	4	2	2	8	2.7
	분과위원회	2	1	2	5	1.7

주: 회의 횟수는 출석회의 및 서면회의를 합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5.3.)

□ 추계 결과, 국가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6,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국가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본위원회	민간위원 수(A)	35	35	35	35	35	—
	회의개최 횟수(B)	3	3	3	3	3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소계 (D=A×B×C)	32	32	32	32	32	158
분과위원회(4개) -실무위원회(1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3개)	민간위원 수(E)	36	36	36	36	36	—
	회의개최 횟수(F)	2	2	2	2	2	—
	사례금 단가(G)	30	30	30	30	30	—
	소계 (H=E×F×G)	22	22	22	22	22	108
합계(I=D+H)		53	53	53	53	53	266

주: 제정안 및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27조제2항)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농업농촌사회적가치 확산지원’ 세부사업⁹⁾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기반 조성’ 내역사업 중 교육·홍보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2024년부터 예산이 삭감됨

[표 7] 교육·홍보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400	800	900	—	—
편성내역	교육홍보 400	교육 전문 강좌 300, 활동가 발굴 100,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워크숍, 홍보 등) 400	교육 전문 강좌 400, 활동가 발굴 100,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워크숍, 홍보 등) 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홍보 사업이 다시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제정안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억원(연평균 7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예산 삭감 직전 3년 평균 예산 수준(700백만원/연)으로 사업이 다시 실시된다고 가정함

[표 8]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00	700	700	700	700	3,500	700

주: 과거 실시한 유사 사업이 제정안의 시행으로 다시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실시 방식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35-394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확산
- (사업내용)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확산동력 마련
 - (지자체 계획수립)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별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공급모델 개발, 실증연구 등 연구용역비 지원('23년 종료)
 - (확산기반조성) 교육·홍보, 사회적가치 확산, 식재료규격 표준화 등
 - － (교육·홍보) 다양한 주체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상호교류 확대('23년 종료)
 - － (사회적 가치 확산촉진)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의 다양한 지역먹거리계획 실천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확산지원('23년 종료),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안전·영양·복지·환경 등)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자·생산자·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직거래 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직거래 가치를 전파해 농산물 직거래 참여 활성화 유도
 - (푸드플랜운영) 공공기관 급식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안정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조직화 지원('23년 종료)
 - (공공급식통합플랫폼구축) 공공급식 수요·공급자간 거래시스템, 행정조직의 관리시스템, 대국민 정보서비스 등 기능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외식업체의 지역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국내 농업과의 동반성장 추진('23년 종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생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 안전, 물류, 배송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예산현황
 - 사업명: 농식품소비기반조성(세부사업)-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내역사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예산: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 지자체 계획 수립	• 1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 × 20개 지역	1,000	1,000	1,000	—	—
■ 확산기반 조성	소계	1400	2,150	2,150	450	450
	• 교육·홍보	400	800	900	—	—
	• 사회적 가치 확산 촉진	700	850	750	250	250
	• 식재료 규격 표준화	300	—	—	—	—
	• 직거래 종합정보		500	500	200	200
■ 푸드플랜 운영	소계	2,650	300	300	—	—
	• 안전·품질 관리	2,500	— (지방이양)	— (지방이양)	— (지방이양)	— (지방이양)
	• 기획생산체계 구축	150	300	300	—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센터 1개소당 6,000백만원 (국비 40%, 2,400백만원) — 지자체 자본보조(2년 사업) — 1년차: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300 강원 화천	2,400 강원 화천 경기 안성	2,400 경기안성 전북전주	2,400 전북전주 경북의성

[참고자료 2]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현황

구분		지자체	
		기초	광역
‘18년	9개 지자체	서울(서대문구), 대전(유성구), 청양, 해남, 완주, 나주, 춘천, 상주	충남
‘19년	24개 지자체	수원, 용인, 이천, 평택, 포천-연천, 괴산, 서산, 부여, 익산, 김제, 부안, 담양, 순천, 장성, 구미, 안동, 거창, 김해, 진주, 대전 대덕구	부산, 전남, 제주
‘20년	18개 지자체	홍천, 금산, 예산, 남원, 광양, 영암, 김천, 영주, 칠곡, 거제, 통영, 광주(광산구)	강원, 경북, 울산, 인천, 전북, 충북
‘21년	21개 지자체	강릉, 원주, 남양주, 함양, 양산, 합천, 의성, 영천, 포항, 여수, 무안, 임실, 정읍, 천안, 논산, 태안, 청주, 제천, 영동, 증평, 전주	
‘22년	15개 지자체	서울(은평구), 화성, 양구, 보은, 진천, 옥천, 서천, 진안, 신안, 함평, 경산, 성주	세종, 광주, 대구
‘23년	17개 지자체	동구, 용인, 광명, 고성, 철원, 단양, 아산, 진도, 장흥, 고흥, 경주, 문경, 영양, 봉화, 군위, 청도, 고성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완료 지자체 현황 (’24년 기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16개소	135개소
서울(’21)	●서울1 [서대문 ² (’23)]
부산(’21)	●광주1 [광산(’22)]
인천(’24)	●대전2 [유성 ² (’24), 대덕(’21)]
광주(’24)	●경기29 [수원(’23), 성남(’24), 의정부(’23), 안양(’23), 부천(’23), 광명(’24), 평택(’21), 동두천(’23), 안산(’24), 고양(’23), 구리(’23), 남양주(’23), 오산(’23), 시흥(’20), 군포(’23), 의왕(’23), 하남(’23), 용인(’24), 파주(’23), 이천(’21), 안성(’22), 김포(’23), 화성 ² (’23), 광주(’23), 양주(’23), 포천(’23), 여주(’22), 연천(’21), 가평(’21)]
울산(’21)	●강원17 [춘천(’24), 원주(’24), 강릉(’24), 동해(’23), 태백(’23), 속초(’23), 삼척(’24), 홍천(’23), 횡성(’23), 영월(’24), 평창(’23), 정선(’24), 철원(’23), 양구(’23), 인제(’23), 고성(’23), 양양(’24)]
세종(’23)	●충북9 [청주(’22), 충주(’20), 제천(’23), 보은(’24), 옥천(’23), 영동(’22), 증평(’22), 진천(’23), 괴산(’21)]
경기(’24)	●충남15 [천안(’22), 공주(’20), 보령(’23), 아산(’19), 서산(’20), 논산(’23), 계룡(’23), 당진(’21), 금산(’23), 부여(’21), 서천(’23), 청양(’23), 홍성(’23), 예산(’21), 태안(’21)]
강원(’23)	●전북12 [전주 ² (’22), 군산(’18), 익산(’20), 정읍(’24), 김제(’20), 완주(’24) ² , 진안(’23), 무주(’21), 장수(’23), 임실(’23), 고창(’20), 부안(’20)]
충북(’21)	●전남15 [목포(’24), 여수(’22), 순천(’23), 나주 ² (’24), 광양(’23), 담양(’23), 곡성(’24), 구례(’24), 고흥(’24), 화순(’24), 해남(’20), 영암(’23), 함평(’22), 장성(’24), 신안(’23)]
충남(’19)	●경북21 [포항(’24), 경주(’23), 김천(’23), 안동(’22), 구미(’20), 영주(’23), 영천(’23), 상주(’23), 문경(’24), 경산(’23), 의성(’22), 청송(’23), 영양(’24), 영덕(’24), 청도(’24), 고령(’24), 성주(’24), 칠곡(’23), 예천(’23), 봉화(’24), 울진(’20)]
전북(’24)	●경남13 [창원(’21), 진주(’20), 통영(’21), 김해(’20), 밀양(’20), 거제(’22), 의령(’21), 남해(’20), 하동(’21), 산청(’22), 함양(’24), 거창(’20), 합천(’22)]
전남(’19)	
경북(’23)	
경남(’19)	
제주(’21)	

주: 지자체명에 2가 표시된 서대문², 유성² 등은 지역먹거리계획 2기 수립 지자체임

[참고자료 3]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농산물의 기획생산·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제6항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지원
- **(지원대상)**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지원현황)** '22년부터 4개 지자체(강원 화천, 경기 안성, 전북 전주, 경북 의성) 지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1년차
지자체	강원 화천군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경북 의성군

□ 예산: 지자체 자본보조, 2년차 사업

- **(지원규모)** 1개소
- **(지원내용)**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저온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대시설 등 지원(부지매입·운영비 제외)
* 1년차: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2년차: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예산)** 6,000만원 규모 기준, **국비 2,400백만원(40%), 지방비 3,600백만원(60%)**
※ 6,000백만원 규모 이상일 경우 국비는 2,400백만원(최고)
 - 1년차 300백만원(6,000백만원×40%×12.5%)
 - 2년차 2,100백만원(6,000백만원×40%×87.5%)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예산

○ 강원 화천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300	-	-	-	-	300	300	-	-
2023	2,100	-	-	-	-	2,100	2,100	-	-

○ 경기 안성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3	300	-	-	-	-	300	300	-	-
2024	2,100	-	-	-	-	2,100	2,100	-	-

○ 전북 전주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25.1)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4	300	-	-	-	-	300	300	-	-
2025	2,100	-	-	-	-	2,100	1,470		

○ 경북 의성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25.1)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5	300	-	-	-	-	300	1,470		